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윤영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0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발 의 자: 윤영희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춘곤,
박성연, 유만희, 이소라,
이은림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,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하면서 학생, 교직원,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교육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- 이에 한의사, 치과의사 등 전문의료인을 활용하여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, 자문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학생 건강증진 사업'에 '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, 자문 등 지원 사업'을 신설함(안 제5조제1항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학교보건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, 자문 등 지원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)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5조(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, 자문 등 지원 사업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의료를 활용한 건강검진교육 및 상담, 자문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신설되는 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 문의결과 현재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가적인 재정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[참고] 2024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서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명	2024년 예산내역
학교보건관리	○ 학교교의사업 = 128.400
	- 협의체운영수당 2,200,000원 (80,000원+30,000원)×10명×2회
	- 사업추진경비 200,000원
	- 학교회계전출금 126,000,000원

※ 2024년 학교 주치의(교의)지원 사업 운영 계획(안)

- 사업기간 : 2024.3. ~12.
- 지원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126교 내외
- 지원금액 : 126,000천원(교당 500천원 ~ 1,500천원 범위 내 지원)
- 지원내용
 - 지역의료단체와 협의체 구축하여 한교-인근 병원과의 연계 강화
 - 학교 주치의(교의)제도 운영 및 학교보건 증진 관련 정기회의 운영
 - 학교 주치의(교의)가 각급학교에 질병예방 강연·교육실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당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계분석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